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 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밖의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